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96
----------	-------

발의연월일 : 2026. 8. 21.

발 의 자 : 박홍배 · 김남근 · 민병덕
윤준병 · 이정현 · 김 윤
박정현 · 김태년 · 남인순
이연희 · 서미화 · 이광희
염태영 의원(13인)

제안이유

택배서비스산업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산업으로 자리 잡았으나, 최근 심야배송 확대에 따라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장시간 야간작업이 일상화되면서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과로사 등 심각한 건강상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야간노동은 국제적으로도 발암가능요인으로 분류되는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야간작업시간, 연속근무, 휴식시간, 건강관리 등에 관한 별도의 보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집화·배송 외의 하역·분류 등의 업무까지 수행하면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건강상 이유로 야간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도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

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에 대하여 야간작업 시간과 연속 근무를 제한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건강진단 실시, 야간작업 부적합자의 보호, 야간작업에 대한 할증보수 지급, 집화·배송 외 업무의 제한 및 추가 업무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이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1일·1주 야간작업시간, 연속 야간작업일수, 월간 야간작업 횟수 및 연속 휴식시간 등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36조의2제1항).

나.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야간작업 시간을 기록·보관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 이상으로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며, 야간작업 부적합 판정을 받은 종사자에게는 야간작업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6조의2제2항 및 제3항).

다. 건강진단 결과 야간작업 부적합 판정을 받은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가능한 한 적합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작업 방법 조정 또는 주간작업 전환 등을 하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6조의2제4항).

라. 야간작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할증보수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36조의2제5항).

마.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집화·배송 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에 따라 집화·배송 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서면 합의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36조의2제6항).

바. 택배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영업점이 야간작업 보호조치를 이행하는지 관리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9조제1항제3호).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개선조치의 대상에 야간작업 보호조치의 이행을 추가함(안 제39조제3호의4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6조의2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야간작업에 대한 보호조치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택배서비스종사자의 야간작업에 대한 보호조치) ①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은 야간작업(오전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연속 7시간 이상 수행하는 모든 작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한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일 야간작업 시간은 최대 10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1주 단위로 평균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당 야간작업 시간은 최대 48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2주 단위로 평균하여 4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야간작업의 종료 후에는 최소 11시간의 연속된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4. 연속 야간작업 일수는 최대 3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연속하여 3일을 야간작업한 경우에는 제3호의 11시간에 더하여

최소 24시간의 연속된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6. 1개월의 기간 동안 야간작업 횟수는 최대 12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은 택배서비스종사자별 야간작업 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③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야간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야간작업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야간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택배서비스종사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은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야간작업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가능한 적합한 직무를 부여하거나 작업의 방법을 조정하거나 주간작업(야간작업 외의 작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야간작업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은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주간작업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⑥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은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집화·배송 업무(전산입력 등 집화·배송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외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의 종류, 수행시간 및 보수에 관하여 서면으로 합의할 것
2. 집화·배송 업무 외의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보수를 지급할 것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야간작업의 시간·횟수 등의 산정방법과 휴게·대기시간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3호의4를 제3호의5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제36조의2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야간작업에 대한 보호 조치의 이행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영업점에 대한 관리) ①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영업점이 해당 영업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택배서비스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영업점에 대한 관리) ① -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u><신설></u>	3. <u>제36조의2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야간작업에 대한 보호조치</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u>제36조의2(택배서비스종사자의 야간작업에 대한 보호조치) ①</u> <u>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은 야간작업(오전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연속 7시간 이상 수행하는 모든 작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한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u>

하여야 한다.

1. 1일 야간작업 시간은 최대 10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1주 단위로 평균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당 야간작업 시간은 최대 48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2주 단위로 평균하여 4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야간작업의 종료 후에는 최소 11시간의 연속된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4. 연속 야간작업 일수는 최대 3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연속하여 3일을 야간작업한 경우에는 제3호의 11시간에 더하여 최소 24시간의 연속된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6. 1개월의 기간 동안 야간작업 횟수는 최대 12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은 택배서비스종사자별 야간

작업 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③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야간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야간작업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야간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택배서비스종사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은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야간작업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가능한 한 적합한 직무를 부여하거나 작업의 방법을 조정하거나 주간작업(야간작업

외의 작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야간작업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은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주간작업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⑥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은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집화·배송업무(전산입력 등 집화·배송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외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

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확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 3의3. (생략)

<신설>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의 종류, 수행시간 및 보수에 관하여 서면으로 합의할 것

2. 집화·배송 업무 외의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보수를 지급할 것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야간작업의 시간·횟수 등의 산정방법과 휴게·대기시간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

-----.

1. ~ 3의3. (현행과 같음)

3의4. 제36조의2에 따른 택배서

<u>3의4.</u> (생략)	<u>비스종사자의 야간작업에 대한 보호조치의 이행</u>
4.·5. (생략)	<u>3의5.</u> (현행 제3호의4와 같음)
	4.·5. (현행과 같음)